

##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훈령 일괄개정규정

제정 2023. 5. 22. 훈령 제74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안양시 훈령 중에 표기된 “만” 용어를 삭제하여 일괄 정비함으로써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 입법 절차의 경제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양시 시정현장평가단 운영 규정」의 개정) 안양시 시정현장평가단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만 20세”를 “20세”로 한다.

제3조(「안양시 공무원 관리 규정」의 개정) 안양시 공무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만 8세”를 “8세”로 한다.

제4조(「안양시 직장어린이집 관리·운영 규정」의 개정) 안양시 직장어린이집 관리·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안양시 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의 개정) 안양시 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만8세”를 “8세”로 한다.

제6조(「안양시 환경공무원 관리 규정」의 개정) 안양시 환경공무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만 18세 이상”을 “18세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만 61세”를 “61세”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